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The Proposal of Insurance Supervisory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4

오 창 수*
Changsu Ouh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부채평가부분일 것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경우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 및 지급여력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일반회계에 도입될 경우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채의 평가방법과 변화될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보험계리제도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책임준비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평가의 방법이 변화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손익분석제도 등도 새로운 제도와 일관성 있는 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계리제도를 기초로 감독회계 운영방안, 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및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IFRS4 도입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운영방안들을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국문 색인어: 국제회계기준, 감독회계, 부채평가, 보험계리제도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51600

* 한양대학교 경상대 교수(csouh@hanyang.ac.kr)

논문 투고일: 2015. 05. 25, 논문 최종 수정일: 2015. 07. 11, 논문 게재 확정일: 2015. 08. 27

I. 서언

국제회계기준이란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요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하는 말이다¹⁾.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서가 IFRS4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IFRS4 1단계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1단계에서는 각국의 회계 관행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2단계 수정공개초안과 같이 국제회계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제회계기준 하의 보험부채의 평가방법과 현행 우리나라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경우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 및 지급여력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무회계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일반회계에 도입될 경우 이러한 일원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부채의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보험계리제도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채의 평가방법의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부채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부채의 평가방법과 변화될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책임준비금 산정방법과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

1)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서문, 2008.

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과 변화될 지급여력제도는 일관성을 갖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보험계리제도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약환급금제도는 책임준비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평가의 방법이 변화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손익분석제도와 계약자배당제도 등도 새로운 제도와 일관성 있는 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IFRS4 2단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기초로 감독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국제적 기준의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을 기초로 3장, 4장, 5장에서 IFRS4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감독제도 운영방안은 감독회계 운영방안,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및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제적 기준의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²⁾

1. 국제회계기준 2단계³⁾

가.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그동안 논의문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하고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2010년 7월 30일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4호 2

2) 다음 발표문문을 참조하였음. 오창수, 국제적 기준하의 보험계리제도 방향, 한국계리학회 정책세미나, 2014. 6. 30.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3) 오창수 외, “IFRS4 Phase II 시행시 영향 및 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계리학회, 2013. 10, pp. 1-27에서 참고 인용하였다.

단계의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그동안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종기준을 발표하기 전에 2013년 6월에 수정된 공개초안을 다시 발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3년 10월 25일까지 수정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에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된 공개초안은 2010년에 발표된 최초 공개초안과 비교하면 보험부채의 측정방식은 큰 흐름에서는 유사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의 손익의 인식방식 및 표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의 주요 내용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표시방법, 할인율 변동의 OCI 처리, underlying item의 처리,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⁴⁾의 인식 및 전환과 관련된 내용 등이다. 여기서는 부채 평가방법에 대한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 수정된 공개초안의 부채 측정모형

2013년 6월에 발표된 수정된 공개초안은 2010년 7월에 발표된 기존의 수정된 공개초안과 비교할 때 측정모형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0년 7월 발표 이후에 많은 논의가 되었던 각 블록⁵⁾의 측정 어려움, 손익의 변동성, 최초 적용의 어려움 등의 내용들이 수정된 공개초안에 반영되었다.

수정된 공개초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채측정방법의 기본 틀은 building block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논의되었던 two margin approach⁶⁾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초의 building block 방식은 부채측정을 위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나, 수정된 공개초안은 그 내용(미래현금흐름,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은 거의 유사하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4) 2010년 최초 공개초안의 잔여마진(residual margin)이 수정된 공개초안에서 계약서비스마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building block approach의 각 block: 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

6) two margin approach: IASB에 의해서 최초 공개초안에서 소개되었던 building block approach 중 하나이며,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 service margin)으로 구성된 margin 구조를 나타낸다.

(1) 구성요소 1: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

이행현금흐름(미래현금유출의 현가 - 미래현금유입현가 + 위험조정)은 평가시점의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장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며, 이에 시간가치의 조정을 하고, 또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위험조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금흐름은 보험회사로부터 유출된 것과 유입되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며, 편중되지 않는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가정에 의해서 생성 또는 추정되며 확률적 가중 평균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생성된 보험회사의 고유한 현금흐름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발생한 현금흐름을 평가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금액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유하는데 요구하는 보상으로서의 위험조정을 계상한다. 수정된 공개초안은 위험조정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신뢰수준기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으로 변환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성요소 2: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서비스마진은 자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구성요소1, 즉 미래현금흐름의 현가와 위험조정의 합이 음수가 되지 않게 하는 값을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계약서비스마진은 판매시점에 보험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분이며, 이후 보험계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된다.

계약서비스마진을 제외한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의 각 요소는 매 보고기간마다 재측정되며, 측정 시점의 해당 보험회사의 최적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평가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은 모두 locked-out 방식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비스마진은 판매시점에 이행현금흐

름의 음수, 즉 보험계약의 마진을 판매시점시 이익으로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하지 않기 위한 항목이지만, 계약서비스마진이 음수일 경우, 즉 판매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이 양수일 경우 또는 판매시점 이후 평가시 손실로 나타났을 때에는 즉시 장부상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 Solvency II⁸⁾

가. 개요

유럽위원회는 2007년 7월 현행지급여력제도(Solvency I)의 개선을 위해 13개로 산재된 보험감독에 관한 지침(Directive)을 1개로 단일화하는 Solvency II 안을 마련하여 유럽의회와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지급능력제도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에 의뢰하여 계량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11년부터 EIOPA⁹⁾(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가 CEIOP 역할을 대체하였다. Solvency II는 2016년에 EU에 도입이 확정된 상태이다.

Solvency II는 은행권역의 신BIS협약과 유사한 3개축 구조이며, 이는 지급능력(pillar1), 리스크관리(pillar2), 공시(pillar3)로 구분된다. Solvency I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리스크 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능력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규제자본인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책임준비금을 결정하게 된다. Solvency II는 여러 계량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즉 리스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산, 부채, 요구자본, 가용자본 간의 상호의존성과 리스크를

7) 매 측정시 마다 가정을 측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이용하여 새롭게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식.

8) 오창수 외, “Solvency II 표준·내부모형 도입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계리학회, 2012, pp. 1-25에서 참조 인용하였다.

9) EIOPA는 2011년부터 출범된 유럽연합의 4대 금융감독기구 중의 하나이다.

적정하게 인식·평가하는 총재무제표방식을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가용자본, 지급능력 요구자본(SCR), 최소요구자본(MCR) 및 자산운용을 규정하고, 가용자산(available financial resources)이 부채와 자본요구량을 초과하도록 요구한다.

지급능력 요구자본(SCR)은 보험사업자의 파산확률을 0.5% 이내로 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으로서 모든 잠재손실을 표준공식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신뢰도 99.5%의 VaR(Value at Risk)로 측정한 값이다. 또한 최소요구자본(MCR)은 보험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자본수준으로서 위반 시 인가취소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가능하다.

Solvency II는 각 회사 고유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하는 표준모형, 감독기관의 승인 아래 회사 고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완전내부모형과 부분내부모형에 의하여 SCR을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내부모형에 의한 SCR 측정·평가에는 경제적 요구자본(Economic Capital: EC)을 산출해야 하며, 이 때 다양한 리스크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가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요구자본은 규제자본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규제자본이 파산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경제적 요구자본은 보험사업을 위협하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급능력 요구자본(SCR) 산출 표준모형

지급능력 요구자본(SCR)의 표준모형은 분류된 각 리스크별로 산출한 SCR을 결합하는 방식인 모듈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SCR 계산 시 리스크 간 상관관계수가 이용된다. 이 방식은 모듈이 분명하게 정의되었을 때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 모듈별로 정보를 취합하여 감독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지급능력 요구자본(SCR)은 기본요구자본(BSCR)과 운영리스

크요구자본(SCRop)을 합산하고 경감효과(Adj)를 조정하여 산출한다. BSCR과 SCRop을 분리한 것은 운영리스크 산출과 관련된 자료의 부족과 운영리스크와 다른 리스크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요구자본(BSCR)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시장리스크 요구자본(SCRmkt), 건강보험리스크 요구자본(SCRhealth),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 요구자본(SCRdef), 생명보험리스크 요구자본(SCRlife), 손해보험리스크 요구자본(SCRnl), 무형자산리스크 요구자본(SCRintangible)을 통합·산출한 요구자본이다.

SCR의 산출에는 금융자산과 보험인수에 의하여 노출되는 모든 계량화 가능한 리스크가 고려된다. 이에 따라 표준모형에 의한 BSCR 계산에는 시장리스크(금리, 주식, 부동산, 외환, 신용 스프레드, 집중, 비유동성), 신용부도리스크, 생명보험리스크(사망률, 장수, 장애/질병, 해약, 경비, 개정, 거대재해), 건강보험리스크(생명보험과 유사), 손해보험리스크(보험료/준비금, 해약, 거대재해), 무형자산리스크 등의 리스크가 고려되고 있다. 또 SCR의 계산시 표준모형에서는 운영리스크 외에도 장래배당정책의 변경과 이연세금의 효과로 인한 리스크 흡수효과(absorbing effect)를 명시적으로 경감효과(Adj)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QIS5에서는 QIS4와 마찬가지로 SCR의 계산 시 경감효과(Adj)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QIS3와 다른 점이다¹⁰⁾.

다. Solvency II의 보험부채평가 원칙

현행 RBC제도에서는 공시용 재무제표를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시용 재무제표에서는 원가와 시가평가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Solvency II에서는 Solvency II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Solvency II에서는 총재무제표방식(total balance sheet)이 사용되는데 이는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적정요구자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인식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Solvency II Directive에 나타난 가치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자산과 부

10) QIS는 계량영향평가로 개정시마다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고 있다.

채를 평가할 때 경제적이며 시장과 일치된 방법의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i) 자산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당사자들 간의 정상거래에서 참여자들이 교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ii) 부채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당사자들 간의 정상거래에서 이전되거나 정산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iii) 금융부채를 평가할 때 보험사의 자기신용상태 변화를 고려하는 후속 조정이 없어야 한다.

Solvency II에서 부채인 기술적 준비금(technical provision)은 ① 보험사업자가 보유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와 ② 보험계약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비한 버퍼(buffer)인 리스크 마진의 합으로 정의된다.

보험의무와 관련 있는 미래현금흐름이 신뢰성 있는 시장가치의 관찰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게 복제가 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기술적 준비금의 가치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최선추정치와 리스크마진의 분리계산은 요구되지 않는다. 보험의무에 연관된 일부 혹은 모든 미래현금흐름이 믿을만한 시장가치가 관찰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게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i) 보험의무에 연관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위험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복제에서 사용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연관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복제해야 하며, (ii) 복제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금융상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부채평가와 관련하여 (i) 계약자가 계약 옵션(실효와 해약 포함)을 행사할 가능성에 의존하는 보험의무와 관련된 현금흐름 (ii) 사망, 재해, 질병, 질병률의 수준, 추세 또는 변동성에 의존하는 보험의무와 관련된 현금흐름 (iii) 보험의무의 서비스에서 발생될 모든 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은 신뢰성 있게 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형평가접근(marking to model approach)이 사용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실제 작업에서는 보험부채의 현금흐름 추정 시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한다.

라. IFRS4와 Solvency II와의 관계

IFRS4는 일반회계이고 이와 일관성 있는 지급여력제도는 Solvency II로 볼 수 있다. QIS5에서는 IFRS4와 Solvency II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IFRS 수치(IFRS figures)가 Solvency II하에서 경제적 가치평가(economic valuations under Solvency II)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견해(tentative views)를 나타내고 있다. QIS5에서는 IFRS4와 Solvency II 사이의 조정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IFRS 평가 규정(IFRS valuation rules)이 경제적 가치평가(economic valuation)방법과 가까워지도록 IFRS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Solvency II하에서 평가 시작 시에 IFRS와 부합되지 않는 회계수치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IFRS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수치를 사용하는 근거(rationale)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하고 그 결과 차이 값에 대해 밝혀야 한다.

III. 감독회계 운영방안¹¹⁾

1. 회계제도 개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존재하는 형태는 상이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영 및 감독에 있어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2016년 EU에 도입될 Solvency II는 지급여력제도에 감독회계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각국의 사례는 일원화와 이원화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향후 IFRS4가 도입될 경우 각국의 형태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 2005년 국제회계

11) 오창수의 3인, “IFRS4 Phase II 시행시 영향 및 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계리학회, 2013. 10. 31; 오창수 외 3인,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2014. 1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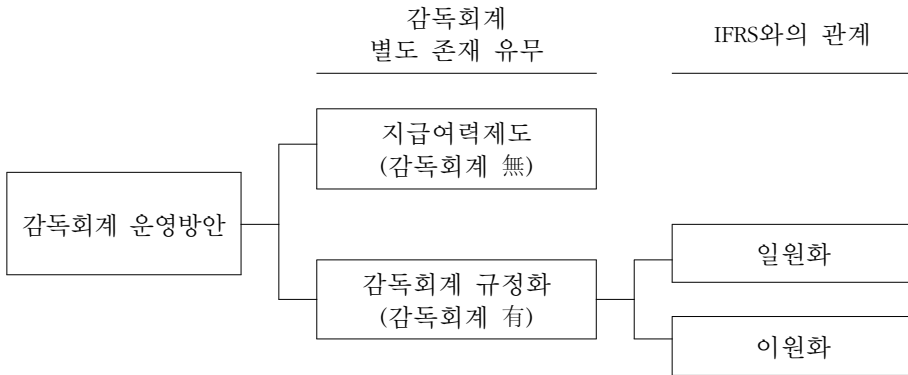
〈표 1〉 보험회사 관련 회계

회계	목적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	재무건전성 등 감독 목적
일반회계(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주주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 목적
관리회계(Managerial & Cost Accounting)	각종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목적
세무회계(Tax Accounting)	과세소득 산출 목적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은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에서 동일하므로 일원화로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동일하다. 영국의 경우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자본/당기순이익 및 준비금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이원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부공시용과 감독목적용 재무제표가 별도 기준에 의해 작성되므로 이원화되어 있다.

회계는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정치적 산물로서 각국의 경제적 상황 및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관련 회계제도가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별도의 감독회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 등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감독회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IFRS와 일원화할지 이원화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림 1〉 감독회계 운영방안



2.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

가. 통합안 개요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하는 안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감독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고 지급여력제도에 필요한 모든 관련 규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즉, 이 경우 감독회계나 감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외부투자자를 위한 IFRS에 의한 재무제표와 감독목적의 지급여력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후술하는 ‘보험부채평가 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1)’에서의 방안6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목적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의 처리 방법까지 규정하는 실질적 일원화의 상태가 실무적으로 오래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하고 회사는 외부에 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방안은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향후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급여력제도가 존재한다면 별도의 감독회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지급여력제도를 근간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회계(US-GAAP)와 감독회계(SAP)가 별도로 존재하나 그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동시에 존

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00년대에 감독회계가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analyst)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회계가 제정되었고, 이 일반회계는 상호회사 이외의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회계는 모든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상호회사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즉, 미국의 경우는 일반회계에 따른 작성 의무가 모든 보험회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감독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표 2〉 미국의 재무회계와 감독회계

구분	상장사 등 생명보험사	상호회사 등
재무회계(US-GAAP)	적용 → SEC 제출	적용의무 없음
감독회계(SAP)	적용 → NAIC 제출	적용 → NAIC 제출

따라서, IFRS4 도입의 경우 미국의 사례만을 생각하여 감독회계가 별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미국의 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IFRS4 2단계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미국의 감독회계와 같은 별도의 감독회계를 계속 별도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때 최종 기준서와 도입될 지급여력제도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통합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장단점

별도의 감독회계가 존재하지 않고 지급여력제도만으로 운용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회계의 제정 및 개정 부담이 없을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지급여력제

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회계의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단점이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감독회계에 의한 실질적 일원화에 적응된 업계 관행에서 탈피하는데 있어 적응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3.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일원화

가. 일원화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당기순이익 및 보험부채(예: 책임준비금 등)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안 실질적 일원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IFRS4 1단계가 도입되어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등 일부계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 일원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행의 일원화는 감독회계를 기준으로 한 일원화이지만, 향후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일원화는 IFRS4 2단계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 일원화의 개념 변화

구분	현재	미래
일원화 기준변화	감독회계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 일원화(일반회계를 감독회계에 일치시키는 방향)	IFRS4를 기준으로 한 일원화(감독회계를 IFRS4 2단계에 일치시키는 방향)

이 방안은 후술하는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1)’에서의 방안5로 볼 수 있다. 이 운영방안은 일반회계를 감독회계로 공식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나. 장단점

일원화의 장점은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하나로 하는 경우 상호

제도간의 이해가 수월할 수 있고, 상호 연계한 경영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향후 국제회계기준서 개정에 따라 감독회계가 타율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건전성 감독에 대한 독립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부채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 지급여력금액 또는 최소 요구자본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안정적 지급여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이 규정중심(Rule based)보다는 원칙중심(Principle based)에 의한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져 감독목적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4.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

가. 이원화 개요

향후 IFRS4가 도입될 경우 외부공시용 재무제표의 작성에는 IFRS4 2단계가 적용되고, IFRS4 1단계에서와 같이 감독회계가 적용될 수 없다. 감독회계가 IFRS4와 다른 부채평가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같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가정의 설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부채의 평가액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감독회계와 일반회계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원화로 정의하기로 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주된 목적은 투자자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감독회계는 재무건전성 등 감독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그 목적이 상이하다. 감독당국은 감독목적상 감독회계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독회계를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용하는 이원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표 4〉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비교

구분	감독회계	일반회계(IFRS)
목적	재무건전성 등 감독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공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주된 정보 이용자	감독당국, 투자자 일부	투자자,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정	청산(liquidation) 가정 하에 지급여력 측정능력, 재무정보의 보수성, 보험업 고유의 특성 반영 등을 중시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 하에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보고를 통한 미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의 예측능력, 재무정보의 중립성, 타 업권간 비교가능성 등을 중시
현재 관련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등	외감법, IFRS,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등
제정 주체	감독당국 등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나. 감독회계의 작성원칙

향후 IFRS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적합한 감독회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감독회계의 작성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성원칙은 IFRS 등과 같은 원칙중심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과 규정중심 접근법(Rule-based approach)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Principle-based approach

전 세계적으로 IFRS4 2단계, 미국의 PBR 등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평가제도의 변화 및 지급여력제도와 감독회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i)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및 금융산업의 융합화
- (ii) 보험상품의 복잡성 증대로 위험측정의 필요성 증대

- (iii) EU 시장에서의 보험영업 수행 등 국제적 기준의 적용 필요
- (iv)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 (v) 현대 위험관리 이론의 보험에의 적용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감독회계의 규정이 너무 자세히 작성되어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적시에 모두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감독회계 작성시 원칙중심 접근법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이 채택될 경우 일부 사례나 지침 등을 통하여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된다면 도입초기의 혼란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Rule-based approach

변화의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방법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감독목적을 위한 기업간 비교 가능성 및 규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서는 규정중심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존의 감독규정과 같이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변경될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이나 보험상품의 복잡성 증대 등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규정중심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원화 장단점

이원화의 장점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제정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즉, 감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국내 환경에 맞는 감독회계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감독회계가 지급여력제도와 별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된다면 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원화의 단점은 현행의 실무상 일원화와 비교하면 회사가 별도의 이원화된 장부 유지, 시스템 별도 유지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향후 감독회계와 지

급여력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감독회계 및 관련 지급여력제도의 별도 제정 및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될 수 있다.

5. 세무회계 운영방안

현행 세무회계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식(이율, 위험률)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보험료적립금을 법인세법¹²⁾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순보험료식적립금의 순증감액을 법인세법상에서 손금(비용)/익금(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¹³⁾” 개념에 입각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순보험료식준비금은 “권리의무확정” 주의에 거의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현행 원가법 방식의 순보험료식준비금은 시가평가 방식의 영업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IFRS4 2단계에서 평가되는 보험부채는 현행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 주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FRS4 2단계 준비금은 최초 계약 시점 이후에 후속적인 평가를 하므로 평가손익(미실현손익)이 부채 계산 시 포함된다. 평가손익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계리적 가정의 변화, 측정하는 시점의 할인율 변화, 현금흐름에 내포된 불확실성의 변화 및 장래이익의 변화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각

12) 법시행령57조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13)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각의 변화에 따른 증감 요인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것으로 권리의무확정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세무회계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 세법이 IFRS4 2단계를 그대로 수용

세법이 IFRS4 2단계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보험사들의 IFRS4 2단계 부채 회계처리를 세무적으로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IFRS4 2단계 이익인식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더불어 IFRS4 2단계의 부채 공정가치 평가 결과를 세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가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세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실무적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보험업법에 기초한 준비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준비금 평가 방법이 IFRS4 2단계로 전환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나. 세법이 현행 준비금제도를 계속 사용

세법이 IFRS4 2단계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보험업법상의 순보험료식준비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험료적립금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순보험료방식으로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에서 평가되는 보험부채와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하여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세법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부채적용 기준을 마련

세법에서는 IFRS4 2단계에 대하여 보험업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독자적인 세무상 부채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⁴⁾. 독자적인 세무상의 부채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IFRS4 2단계 시행

및 보험업감독규정(현행 보험료적립금 제도 유지 또는 새로운 감독목적의 제도 신설)과는 다르게 별도로 세법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3가지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평가·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보험사들은 3가지 기준의 부채산출이 필요한데 이 경우 보험사는 세무신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¹⁵⁾

1. 기본방향

향후 변화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부채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IFRS4 2단계, 감독회계, 지급여력제도간의 제도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제도이든 평가시점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적절한 가정에 근거하여 각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제도가 평가시점에 현재와 미래의 적정 가정을 통한 보험부채(계약)의 평가(예: 공정가치 평가 등)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와 일관성을 갖는 지급여력제도 및 보험료 산출제도의 동시 채택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 <표 5>에서 보듯이 일반회계인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미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IFRS4 2단계가 확정되면 IFRS4 2단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경우 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의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Federally Prescribed Reserves(FPR, 연방세법상 준비금): (i) 위험률은 감독관식 준비금 산출 시 적용한 표준위험률과 (ii) 미국 재무부가 공시하는 Federal Midterm Rate의 60개월 평균값 중 미국 국세청이 매월 공시(Applicable Federal Interest Rate, AFR)하는 비율과 표준이율 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세법상 준비금 = Min(Max(해약환급금, FPR), 감독식준비금)'을 계산.

15) 오창수의 3인,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2014. 1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5〉 관련제도들의 현재와 미래

구분	현재	미래
일반회계 (IFRS)	- IFRS4 1단계(2011년 시행) - 보험부채: 국가별 기존방식 (우리나라는 감독규정에 따른 원가)	- IFRS4 2단계(2020년 시행 예정) - 보험부채: 공정가치
감독회계	- 감독규정에 따른 부채 평가(원가법) - 과거 및 현행 기준 가정 등 이용	- 미정 〈과제〉 감독회계 일원화/이원화 또는 지급여력제도에의 통합 등 이슈
지급여력 제도	- RBC제도 - 과거 데이터에 의한 계수방식	- 미정 〈과제〉 향후 지급여력제도의 방향성 결정 (예: Solvency II 도입이나 RBC제도의 수정 등)
보험료 산출제도	- 현금흐름보험료산출 - 과거 3이원방식	- 현금흐름보험료산출 〈과제〉 현금흐름보험료산출제도의 활성화

2. 보험부채평가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1)

가. 기본방안

(1) 기본방안 개요

감독회계와 지급여력제도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안1~방안4는 감독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의 감독제도 운영방안으로 볼 수 있고, 방안5는 일원화된 상황에서의 감독제도 운영방안, 방안6은 감독회계가 지급여력제도에 통합된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방안의 특징

(가) 방안1(신평가방식 도입 + 신지급여력제도)

이 방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방법과 Solvency II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부채평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가시점별로 평가 당시의 가정에 기초하여 보험계약부채 등을 평가하는 방식의 도입이며 이러한 방법을 신평가방식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이 방안에서는 감독목적에 위하여 회사가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IFRS4 2단계와 별개로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부채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보험부채

〈그림 2〉 감독회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구분	방안1	방안2	방안3	방안4
감독회계 (부채평가)	신 평가방식	신 평가방식	신 평가방식 (단계적 적용)	현 평가방식 보완
지급여력제도	신 지급여력제도	현 RBC제도 보완	현 RBC제도 보완	현 RBC제도 보완
구분	방안5	구분		방안6
감독회계 =일반회계	신 평가방식	지급여력제도		부채평가
지급여력제도	신 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제도

평가방법이나 가정에서 다소 상이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독목적상 부채의 신평가방식과 일관성을 갖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신지급여력제도로 정의한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부채의 신평가방식과 일관성을 갖는 제도이고 total balance sheet에 기초한 제도를 말한다. 즉, EU의 Solvency II와 같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IFRS와 부채의 신평가방식 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 방안에 있어서도 향후 세부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세부방안1에서 살펴본다.

(나) 방안2(신평가방식 도입 + 현 RBC제도 보완)

이 방안은 감독목적을 위하여 신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지급여력제도는 현 RBC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방안1과 비교하면 지급여력제도를 현재의 RBC제도를 유지하지만, IFRS4 2단계 도입의 영향 및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RBC제도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RBC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필요한 Benchmarking하는 제도는 방안1의 신지급여력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감독목적상 부채평가방식이 신평가방식으로 변화되었는데 기존의 RBC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감독체계상 제도간의 일관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 RBC제도는 계수산정이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계수 산정이기 때문에 현행의 가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방안2는 부채평가시 현행의 가정 등이 사용되는 신평가방식인데 비하여 지급여력제도는 신평가방식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 RBC제도의 보완이 크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방안3(신평가방식의 단계적 적용 + 현 RBC제도 보완)

이 방안은 감독회계의 보험부채 평가 등에 있어서 신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신평가방식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현재의 RBC제

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방안3은 신평가방식의 전면도입이 부담이 되는 경우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라) 방안4(신평가방식 보완 + 현 RBC제도 보완)

이 방안은 현재의 보험부채의 평가방식과 현재의 RBC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부채평가방법에서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신평가방식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다. 현 감독회계의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대안은 향후 변화 방향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의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또는 부채적정성평가)를 보완하거나, 미국의 Principle Based Reserve제도 등 해외 사례를 Benchmarking하면서 현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급여력제도도 미국의 RBC Phase III 등과 같은 제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방안5(일반회계로의 일원화)

이 방안은 대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인 일반회계를 감독회계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일반회계의 평가방법론 등 모든 것을 감독회계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즉, 보험산업에서는 일반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것이다. 지급여력제도는 방안1과 동일하다.

(바) 방안6(지급여력제도와 통합)

이 방안은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하는 안으로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하여 감독회계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방안5는 감독회계가 IFRS4와 완전 일원화된 개념이지만 방안6은 지급여력체계와 통합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방안6의 부채평가는 IFRS4의 부채평가와는 다른 목적으로 다르게 계

산될 수 있다.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EU의 Solvency II는 방안6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여러 가지 세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세부방안1(방안1 ~ 3)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방안 중에서 감독회계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지급여력제도와 병존하는 경우 감독회계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에 따라 다수의 세부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 요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의 부채평가에 초점을 두어 (i) 보험부채의 구성방법과 (ii) 가정의 선택의 2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향후 실무적으로 자세한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소를 더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세부방안의 기준 요소

(가) 부채의 구성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IFRS4 2단계와 Solvency II 등 새로운 제도에서 제시하는 보험부채평가방법을 고려해 보면 보험부채의 구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부채1(BEL + RA + CSM)

IFRS4 2단계에서 제시된 부채평가의 대표적인 모형인 Building Block Approach에 의하면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는 이행현금흐름(BEL+Risk Adjustment)과 계약서 비스마진(CS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부채2(BEL + RM)

Solvency II와 같이 부채구성요소를 BEL과 Risk Margi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채의 평가와 일관성 있는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채2는 부채1보다 감독목적에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2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한 Total Balance Sheet Approach를 통하여 신지급여력제도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부채2는 IFRS4 2단계에 의한 부채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호 차이분석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BEL에 대한 가정차이에 따른 BEL 차이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IFRS4 2단계에서 존재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은 부채2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IFRS4 2단계의 위험조정은 Risk Margin으로 대체된다. Risk Margin은 감독목적상 Risk Adjustment보다 더 많은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⁶⁾.

(나) 가정의 선택

가정사용의 결정주체 및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감독회계의 경우 (i) 감독목적에 위하여 감독당국이 별도로 가정을 결정하는 경우와 (ii) IFRS4 2단계에서 사용하는 가정 등의 외부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경우에도 향후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부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선택을 세부방안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감독목적에 위해서는 감독목적에 적합한 가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더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IFRS4 등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가정이 감독목적에서 볼 때 너무 취약하거나(liberal) 또는 너무 보수적(conservative)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 가정1(감독당국 결정 가정사용)

가정1은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위험률 및 표준이율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기준(reserve basis)으로 제시하여

16) 예를 들어 Solvency II에서 Risk Margin계산시 SCR의 일정비율을 포함한다.

보험료산출기준(premium basis)과 다르게 운용하는 것과 같이 감독목적에 맞는 가정을 감독당국이 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¹⁷⁾. 구체적인 결정방식은 향후 감독체계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고 관련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감독목적을 위해 별도의 가정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감독목적의 달성

감독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IFRS4 2단계에서 사용되는 가정들이 너무 취약하거나 또는 너무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감독목적에 맞는 가정들을 감독당국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비교가능성 제고

감독목적에 맞는 가정을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간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것이다. 보험사간에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일관된 감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들 간에 동일한 가정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장기추세를 고려한 안정성 확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가정의 변동에 의하여 너무 변동성이 크면 감독당국도 안정적인 감독이 어려워지고 보험회사도 자본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보험상품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도 중요하지만 가정 중 예를 들어 할인율과 같은 부분은 변동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 중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할인율에 대하여 변경주기를 중장기로 정하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변동폭이 일정폭 이상 변하지 않으면 전기 할인율을 그대로 사

17) reserve basis와 premium basis 등의 개념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창수·김경희, 최신보험수리학, 제3보정판, 박영사, 2015, pp. 1065-1068.

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급격한 시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일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olvency II의 비유동성프리미엄을 추가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가정2(외부지표 가정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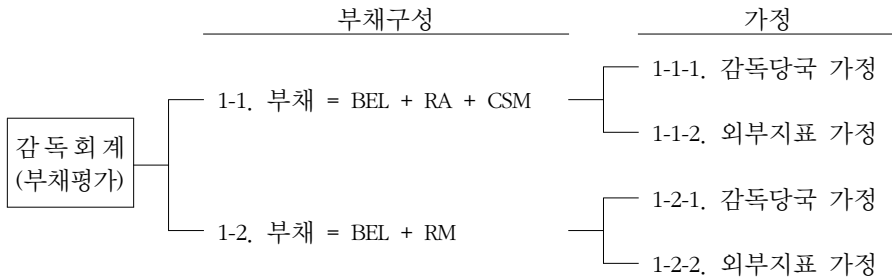
이는 가정을 감독당국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지표 가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IFRS4 2단계에서 회사가 사용하는 가정을 그대로 감독회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부 재무제표 목적의 가정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에 의한 비교가 용이할 것이다. 가정2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의 자율성은 확보되지만, 감독목적상의 비교가능성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

(2) 방안1 ~ 방안3에 대한 세부방안

감독회계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방안1, 방안2 및 방안3)으로 각각 감독회계 체계 구축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예: 부채평가방법, 사용가정의 선택방법 등)를 연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부방안이 있을 수 있다. 부채구성의 경우 부채2(BEL+RM)가 부채1(BEL+RA+CSM)보다 감독목적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채2를 사용할 경우 CSM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¹⁸⁾ 부채1과 부채2의 부채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 부채2를 사용할 경우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기대이익은 Solvency II에서와 같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또 부채2의 RM은 부채1의 RA와 다를 수 있다. 가정선택의 경우 감독목적 및 보험회사의 부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 부채2의 금액은 음수가 가능하다.(신계약의 경우 특히 가능)

19) 오창수 외, “Solvency II 표준·내부모형 도입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계리학회, 2012, p. 111 참조.

〈그림 3〉 방안 1, 2, 3의 세부방안²⁰⁾

다. 세부방안2(방안4)

상기의 방안1 ~ 방안3은 감독회계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부채의 평가에 신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방안4와 같이 현재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경우에는 상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재의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운용을 근간으로 현재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방안4에 대한 세부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감독회계 및 감독제도 전체에 대한 일관된 제도 도입이 되지 못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기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도 상호간 논리적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IFRS4가 도입된다면 감독당국은 방안4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방안4를 적용할 경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정이 같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4는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4의 세부방안 중 부채적정성 평가제도 활용은 지급여력제도의 지향점이 신지급여력제도에 가까우며, 미국 RBC제도 검토는 지급여력제도의 지향점이 현행 RBC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 〈그림 3〉은 방안1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방안2와 방안3도 동일하다.

(1) 부채적정성 평가제도 활용

현행의 부채적정성 평가제도(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기초로 현행의 준비금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향후의 IFRS4 2단계, Solvency II 등을 고려하여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가정의 설정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미국 PBR제도 검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의 방법으로 해외의 감독회계 등의 변화 방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감독회계 등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감독회계가 별도로 명확히 분리되어 운용 중이고 과거의 Formula방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PBR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²¹⁾.

라. 대안(방안의 일정별 결합)

상기의 여러 방안 중에서 어느 방안을 선택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최종 방안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지향점(예를 들어 방안1 등)을 목표로 추진 일정에 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상기의 각 방안에 대하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안은 앞에서 고찰한 방안들의 일정별 결합을 의미한다.

21) 자세한 내용은 오창수 외,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2014. 11, pp. 81-99, pp. 145-176 참조.

(1) 대안1(방안1)

대안1은 도입 부담은 되지만 방안1을 실제적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 대안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의 경우에도 제도의 도입 및 정착 까지 현재 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시행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안2(방안2 → 방안1)

대안2는 방안1을 지향점으로 하고 방안2를 통하여 감독회계는 신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지급여력제도는 현 RBC제도를 우선 보완하여 운용하다가 신 지급여력 제도로 이행해 가는 대안이다.

(3) 대안3(방안3의 단계적 일정 → 방안2 → 방안1)

대안3은 감독회계에 있어서 신평가방식을 도입하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을 하는 것이고, 지급여력도 방안2와 같이 현 RBC 제도를 보완하여 운용하다가 일정을 가지고 방안2와 방안1로 이행하는 대안이다.

(4) 대안4(방안4 → 대안3)

대안4는 감독회계나 지급여력제도에 있어서 현재의 제도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사용하다가 일정을 정하여 대안3이나 기타의 방안으로 이행하는 대안이다.

(5) 대안5(기타)

이 밖에도 도입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기의 방안들을 조합하면서 일정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볼 때 어느 경우이든

방안1이나 방안6 등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향점이 되는 제도는 향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3.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2)

가.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Cash Flow Pricing) 개요

기존의 3이원방식의 보험료산출방식은 보험상품의 복잡화 및 다양화,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보험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보험료 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이익관리를 선진화하면서 IFRS도입 등과 같은 국제적 보험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CFP)가 도입되었다²²⁾.

〈표 6〉 3이원 방식과 Cash-Flow방식 비교

		3이원 방식	Cash-Flow방식
이론적 배경		수지상등원칙	현금흐름(Cash Flow)
계산방식		Formula식 (기수표 사용)	실제 현금흐름 (기수표 미사용)
가격 변수	이율 (할인율)	예정이율 (주로 표준이율 사용)	투자수익률 + Risk Premium
	사업비율	신계약비/유지비/수급비로 구분(규정에 의해)	실제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회사 실제사업비 집행구조에 따라 부가
	위험률	표준(자사)위험률	회사별 실제위험률 + 계리적 판단
	투자이익률	-	자산운용전략과 시장상황 반영
	유지율	-	회사별 실제유지율 + 계리적 판단
	가입속성	가입조건별(성, 연령 등) 수익성 상이	가입조건과 상관없이 동일 수익성도 가능
	재보험	-	보험가격에 반영

22) 우리나라 현금흐름보험료방식의 도입을 제안한 다음 논문을 참조. 오창수, “자산할당 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1집, 한국보험학회, 2005. 8.

	판매규모	-	필요시 반영
	수익성지표	가격 산출 후 사후분석	보험가격 결정의 판단지표
	보증Risk	3이원의 보수적 설정으로 고려	합리적 산출을 통해 보험가격에 반영가능
	기타 가정	고려할 수 없음	상품/채널별 특이성 대한 검증 후 가격에 반영 가능
제도 측면	책임준비금	표준책임준비금	표준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해약공제금	최저해약환급금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급부개념)
	이원분석	규정상 분석 및 보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분석
	계약자배당	이원별 배당	자산할당방식으로 자율결정 (통합배당)

나. Pricing을 고려한 보험감독제도 운영방안

향후 감독제도 운영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1)'의 각종 방안을 구성하는 감독회계 및 지급여력제도에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보험료산출제도(Pricing)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채평가의 방법이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것이 기본방향이므로 보험료산출도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금흐름보험료 산출체계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도입방안별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CFP)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보험감독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감독회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구분	방안1	방안2	방안3	방안4
감독 회계 (부채 평가)	신 평가방식	신 평가방식	신 평가방식	현 평가방식
			(단계적 적용)	보완
지급 여력 제도	신 지급여력 제도	현 RBC제도	현 RBC제도	현 RBC제도
		보완	보완	보완
Pricing	CFP	CFP	CFP	CFP + (3이원)
구분	방안5	구분		방안6
감독 회계 =일반 회계	신 평가방식	지급 여력 제도	부채평가	
			지급여력 제도	
지급 여력 제도	신 지급여력 제도	Pricing	CFP	
Pricing	CFP	Pricing	CFP	

V. 보험계리제도 운영방안²³⁾

1. 해약환급금제도 운영방안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현행 국내 해약환급금제도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산출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하는 산출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감독회계에서 IFRS4 2단계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감독목적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해약환급금제도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약환급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해약환급금 산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 계산을 위한 보험료적립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감독회계 목적을 위해 현행과 다르게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변경된다면 해약환급금 산식 구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가. 1안(현행 해약환급금 산출식 유지 및 보완)

현금흐름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과 감독목적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의 변화²⁴⁾가 발생할 경우 현행 해약환급금 산출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금의 재계산이 필요하다. 즉,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또는 변화된 준비금산출”에서는 안전할증이 없는 최적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는 “해약환급금 계산을 위한 순보험료”를 새롭게 정의하여야 한다. 현행의 3이원방식에서는 장래 보장급부 및 순보험료를 최선가정 부분과 안전할증 부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할증이 없는 최적가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장급부 및 순보험료가 현행 3이원방식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현행 해약환급금 산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23) 오창수의 3인,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2014. 1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4) IFRS4의 보험부채와 동일 또는 현행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금과는 다른 별도의 감독목적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의 도입 등.

산출한다면 현행보다 해약환급금이 작아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흐름 보험료산출 또는 부채평가의 기대이익과 위험조정의 미실현 부분을 해약환급금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계산기초율은 현행 해약환급금 산출시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초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장래지출 및 순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위험률(표준/참조), 투자수익률(예정이율)에 대한 현행 감독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부채 평가방식과 무관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현행 감독규정은 전통형상품의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금리연동형과 같이 부리·적립하는 상품(공시이율, 변액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IFRS4 2단계 도입과 맞물려 감독규정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 때 외국의 최저해약환급금 규정을 참고하여 상품구분(장래법 또는 과거법)에 따른 별도의 최저해약환급금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2안(최저해약환급금을 감독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

보험료산출이나 부채평가에서 적용된 가정과는 무관하게 최저해약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이다. 계약자에 지급되는 최저해약환급금을 규정하고 그 이상 지급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은 회사가 정한 기초율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적립금 계산방법 및 비용공제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방안이다.

해약환급금 계산기초율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며, 해약 시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의 특성 및 한도는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은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해약공제가 되도록 해약공제의 원칙을 정하고, 회사는 감독규정이 정하는 비용에 대한 원칙과 범위 내에서 해약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신계약비 공제기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손익분석제도 운영방안

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손익 및 손익계산서 변화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4 Building Block Approach에 의한 보험부채의 측정방법론의 변화와 관련 수익인식 개념,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 등이 변화되어 손익의 인식패턴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에 대한 손익분석은 IFRS4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및 표시방법에 기초해서 수행될 것이다.

IFRS4 2단계 공개초안에 따르면 손익계산서는 <표 7>²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손익의 변동요소 및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등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표 7> IFRS4 2단계 공개초안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계정과목	금액
I. 보험계약수입(Insurance contracts revenue)	
1. 예상 지급보험금 및 비용(Expected claims and expenses)	
2. 계약서비스마진의 변동(Change in contractual service margin)	
3. 위험조정액의 변동(Change in risk adjustment)	
II. 지급보험금 및 비용(Claims and expenses)	
III. 영업손익(Operating(Underwriting) result) (III = I - II)	
IV. 투자이익(Investment income)	
V. 보험부채에 대한 이자비용(Interest on insurance liability)	
VI. 투자손익(Investment result) (VI = IV - V)	
VII. 당기손익(Profit or loss)	
VIII. 기타포괄손익(보험부채에 대한 할인율 변동효과)	
IX. 당기포괄손익	

25) 여기에서는 IFRS4 2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시하였다.

(1) 당기순이익 구성요소

IFRS4 2단계의 손익계산서의 손익은 크게 보아 보험회사의 영업손익(Operating(underwriting) result)과 투자손익(Investment result)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업손익은 보험계약수입(Insurance contracts revenue)과 실제발생보험금 및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영업손익의 주요소인 보험계약수입은 예상지급보험금과 예상사업비(Expected claims and expenses), 계약서비스마진의 변동(change in contractual service margin), 위험조정의 변동(change in risk adjustment)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지급보험금 및 실제사업비(claims and expenses incurred)는 보험계약수입에서 차감되어 영업손익을 구성하게 된다.

수익인식패턴과 위험조정의 평가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과 위험조정의 당기변동이 수익으로 인식되고,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는 실제와 예상 금액의 차이인 경험조정이 영업손익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수익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독목적의 손익분석의 양식이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적용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투자손익은 투자이익에서 보험부채에 대한 당기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 구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부채에 대한 당기이자비용은 보험부채에 예정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책임준비금 전입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

일반적인 IFRS의 구성요소와 별도로 IFRS4 2단계 수정 공개초안에 의하면 할인율의 변동효과는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나. IFRS4 2단계 도입시 손익분석 운영방안

앞서 살펴본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일원화/이원화 문제 및 감독회계의 방향성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손익분석은 그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 IFRS4에서 제시하는 손익계산서의 형태가 손익을 원천별(보험영업손익과 투자손익)로 구분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실제적인 손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이러한 손익분석을 준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FRS4에서 손익인식방법이 크게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감독회계에서도 손익분석은 IFRS4와 유사하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IFRS4의 손익분석을 기초로 감독목적에 맞게 더 세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계약자배당제도의 운영방안

유배당 관련 배당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가격결정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당을 결정하는 방법은 배당보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가격결정방법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행의 가격산출 유지 및 자산할당(asset share)²⁶⁾ 배당

배당보험의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3이원의 기초율에 보수적인 가정(안전할증)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는 배당보험 보험료는 배당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

26)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분배)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자산형성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산할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수리 상 동질로 인정되는 군단으로 구분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실적에 의거한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이로부터 산출한 순자산을 어느 시점에서 각 계약자(혹은 단위보유계약)에 할당(귀속)시킨 계약의 지분 또는 공헌도를 말한다. 또, 자산할당에서 당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값을 net asset share 또는 surplus라고 한다. net asset share는 사용되는 모형에 따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배당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오창수·김경희, 최신보험수리학, 제3보정판, 박영사, 2015, pp. 1068-1073.

정되므로 사전적으로 최선의 추정치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다만 현행의 3이원배당을 자산할당(asset share)을 활용한 배당방식(배당을 결정 및 재원확인)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자산할당(asset share)은 각 계약군단에서의 분배 가능액의 산정이나 각 군단 간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는데, 이 경우 다음 기배당소요액이 당년도말의 net asset share를 상회하고 있는지의 여부, 혹은 현재와 동일한 환경의 가정하에 장래에도 동일한 배당률을 사용할 경우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 관계법규 및 실무표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활용법이다. 장점으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부담이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감독회계의 준비금제도를 개선·변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을 것이다.

나. 상품개발 시 예상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

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정시 “예상배당금 항목”을 별도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목표액을 각각 ‘Profit Margin과 예상배당금’ 항목으로 보험료 산출시 반영하는데 이때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에 대한 ‘예상배당금 : Profit Margin’²⁷⁾은 회사가 보험료 결정시 다양하게 선택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변경되는 제도의 기본원칙은 모든 적용 기초율이 최선추정치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확률²⁸⁾이 동일해짐에 따라 손실 기여도 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격 산정시 Profit Margin과 배당금에 대한 예측을 명시적으로 보

27)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예상배당금 : Profit Margin = 90 : 10’이 될 것이나, 유배당보험 활성화 측면에서 보험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말함. 예를 들어, ‘예상배당금 : Profit Margin = (50:50), (60:40), (70:30), (80:20), (90:10)’ 중 배당보험 보험가격 결정시 회사가 선택하여 구분하여 계리하고 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계약 선택권을 부여.

28) 현행은 예정기초율이 ‘최선추정치+안전할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정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가 배당할당액을 결정하여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상이하나, 최적가정 산출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이 변경될 경우 예정기초율은 ‘최선추정치’로 구성되어 있고, “최선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 + 예상배당금”의 크기가 배당할당액을 결정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할 것이다.

험사가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다면 유배당보험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 도입에 따른 규정개정 및 실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새로운 유배당보험상품 형태로의 전환

현행 배당제도와 무관하게 “이익배당(가칭)” 방식의 새로운 보험상품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금흐름 원천별로 손익기여도를 측정하여 계약자와 주주간에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상품개발 및 보험료 산출 시점에서 ‘주주: 계약자’ 배분비율²⁹⁾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 원천은 운용자산이익률, 위험률, 사업비율, 해지율 등이 있으며, 상품개발 당시 예측했던 현금흐름과 실제 경험치를 비교하여 손익기여도를 측정하고 초과성과의 일부를 보너스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운용자산이익률의 경우, 현행 무배당금리연동형보험과 같이 공시이율을 회사의 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를 가중 평균한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를 적용하는 상품은 회사의 자산이익률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사전 배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률과 사업비율의 경우도 상품개발 당시 위험률 및 사업비율의 최저가정치보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기여도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 보너스로 환입하거나 차년도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다. 해지율의 경우도 1차년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유지에 따른 손익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정금액(보험료의 xx%)을 보너스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에 환입하거나 차년도 보험료를 할인한다.

반면, 손실 발생 시에는 이익 발생시와 동일한 비율로 주주와 계약자간 손실부담이 필요하며, 사전에 최저보증옵션을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 주주가 전액(상당부분) 부담도 가능할 것이다. 손익 기여도 측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여도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계약자 이해가 쉽

29) 이익 배분비율은 회사가 자유롭게 설정하고 별도 계정 처리를 통해 해당 상품군별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상품개발 판매시 정한 배분비율로 공유.

록 하는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배당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상품설계 형태로 실질적인 배당을 전환하는 것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보험사와 계약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방법은 국제회계기준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부채 평가부분일 것이다. 현행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은 보험료 산출시의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하므로 매 보고기간마다 다른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4 2단계 수정된 공개초안에 따르면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의 각 요소는 매 보고기간 마다 재측정되며, 해당 보험회사의 측정 시점의 최적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평가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은 모두 lock-out방식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부채평가방법의 변화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이 규정하는 부채평가방법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감독회계 상의 부채평가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FRS4의 보험부채 평가방법의 개략적인 구조와 Solvency II의 개요를 2장에서 우선 고찰하였다. IFRS4 2단계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실무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산출체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적용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감독목적의 부채평가에서는 회사간 보험부채 평가 금액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방안들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제3, 4, 5장에서는 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감독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감독제도 운영방안은 감독회계 운영방안, 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및 보험계리제도의 운영방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감독회계의 운영방안에서는 회계제도의 개요, 감독회계를 지급여력제도에 통합,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일원화,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 14를 제시하였으며 세부방안들도 제시하였다.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일원화와 지급여력제도에 통합하는 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독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들은 보험부채평가와 지급여력제도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든 안들이 제시되었다. 현행 책임준비금제도와 지급여력제도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감독제도의 변화의 방향은 보험부채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보험료산출제도, 보험부채평가제도 및 지급여력제도가 일관성을 갖도록 감독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커다란 원칙하에서 감독제도 운영방안들을 제시하였고 향후 우리나라 감독제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FRS4 2단계의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의 변화는 한국 보험감독역사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커다란 변화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보험감독제도와 보험계리제도가 국제적 수준의 제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CFP T/F팀 자료집, 2009.
- _____, IFRS 4 T/F팀 자료집, 2009.
- 금융감독원 · 보험감독국,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 2007. 4.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도 효율화 방안, 2008. 12. 10.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서(Phase II Discussion paper), 2007. 10.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2008.
-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2003. 12.
- _____,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 연구 최종보고서, 2007. 12.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부문(IFRS 4)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8. 8.
- 오창수, “자산할당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1집, 한국보험학회, 2005. 8.
- _____, “리스크를 고려한 생보상품의 수익성 측정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1권 1호, 한국계리학회, 2009. 12, pp. 3-36.
- _____,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22권 2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1. 12, pp. 158-188.
- _____, 국제적 기준하의 보험계리제도 방향, 한국계리학회 정책세미나,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2014. 6. 30.
- _____,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정책세미나, 금융감독원 2층 강당, 2014. 12. 5.
- _____,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관리 방안, 한국계리학회 특별세미나,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2015. 4. 2.
- 오창수 외, “현금흐름에 의한 보험료산출(CFP) 활성화를 위한 계리제도 및 감독방향”, 한국계리학회, 2011. 11.
- _____, “Solvency II 표준 · 내부모형 도입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계리학회, 2012.

- 오창수 외 3인, "IFRS4기준하의 보험부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4권 2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12, pp. 99-122.
- _____, "IFRS4 Phase II 시행시 영향 및 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계리학회, 2013. 10. 31.
- _____, "IFRS4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감독제도 운영방안", 한국계리학회, 2014. 11.
- 오창수 외 4인, "Solvency II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3권 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2. 6.
- 오창수 · 김경희, 최신보험수리학, 제3보정판, 박영사, 2015.
- 오창수 · 이행근, "IFRS4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 특징과 영향", 계리학연구, 제5권, 한국계리학회, 2013. 6.
- 오창수 · 조석희, "보험부채 리스크 마진의 측정에 관한 연구-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84집, 한국보험학회, 2009. 12, pp. 35-68.
- 오창수 · 최양호,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 개선방안 -보증리스크 헷지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계리학회 정책세미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센터포인트빌딩 3층, 2015. 5. 13.
- 이효익 외 2인, 회계원리, 3판, 신영사, 2012.
- 임혜영,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해외사례조사, 삼성금융연구소, 2008. 5.
- 장동식,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 2009. 2.
- 조석희, 보험회계, 신영사, 2012.
- 최양호 · 오창수,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방향, 한국계리학회 정책세미나,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2014. 6. 30.
- 최양호 · 오창수 외,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헷지 등 보증준비금 제도개선 연구, 2015. 4.
- 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보험계약(IFRS4)',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3. 8.

AAA, C-3 Phase I , Phase I Repor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C-3 Subgroup of the Life Risk Based Capital Task Force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Risk Based Capital Work Group, 1999.

_____, C-3 Phase II , Recommended Approach for Setting Regulatory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for Variable Annuities and Similar Products, 2005.

_____, C-3 Phase III , Repor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C3 Life and Annuity Capital Work Group On RBC C3 Requirements for Life Products, 2009.

Actuarial Standards Board, Standards of Practice, 2014. 2.

Atkinson, David and Dallas, James, *Life Insurance Products and Finance*, 2000, Society of Actuaries.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Compiled Accounting Standard AASB1038 Life Insurance Contracts, 2007. 4.

_____, Compiled Accounting Standard AASB1023 General Insurance Contracts, 2007. 11.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udential Standard GPS310 Audit and Actuarial Reporting and Valuation, 2008. 7.

_____, General Insurance Risk margins industry report, 2008. 11.

Australian Life Insurance Actuarial Standard Board, Prudential Standard LPS 1,04 Valuation of Policy Liability Section 5-11.

Bowers, Gerber, Hickman, Jones and Nesbitt, *Actuarial Mathematics*, Second ed., The Society Of Actuary, 1997, pp. 521-523.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Standard of Practice, 2005. 8.

IFRS, Insurance Contract Exposure Draft, 2010. 8, 2013. 6

_____, Insurance Contracts, Basis for Conclusion(ED), 2010. 8., 2013. 6.

INSPRU, Prudential Sourcebook for Insurers, 2014. 9.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Measurement of Liabilities for Insurance

Contracts: Current Estimates and Risk Margins, 2009. 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FRS 4 Insurance Contracts Phase II
Discussion Paper: IASB's preliminary view, 2007. 5.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VALUATION MANUAL, 2012.
12.

Polkinghorn, Philip and Tullis, Mark, *Valuation of Life Insurance*, Third ed., ACTEX
Publication, 1996.

Prudential Standard LPS 34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2013. 1.

Society of Actuaries, *US GAAP For Life Insurer*, 2000.

Abstract

There will be great change in the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4. IFRS4 used in GAAP will lead the fundamental change of valuation of liability in SAP and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GAAP and SAP in insurance field are currently substantively same. However, introduction of IFRS4 may cause hardship to continue current unification of accounting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SAP.

While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is changing, the change of solvency margin system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iability system because current RBC is not consistent with IFRS4 liability system. As most of the actuarial provisions are influenced by the valuation method of liability, calculation of surrender cash value and profit and los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valuation of liability and solvency margin are introduced. Based on these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e reasonable setup of the accounting system of GAAP and SAP, valuation methods of insurance liability, consistent solvency margin system, and related actuarial supervisory provisions.

※ **Key words:** IFRS4, Valuation of Liability, Solvency Margin